KMI 현안연구 요 약

2018 제16호

발간년월 2018년 11월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감 수 하동우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발행인** 양창호 **홈페이지** www.kmi.re.kr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해양수산업 고용영향 분석

장정인 경제산업연구실 실장
(jeongin@kmi.re.kr/051-797-4717)
최석우 경제산업연구실 전문연구원
(schoi@kmi.re.kr/051-797-4777)
정수빈 경제산업연구실 전문연구원
(jsbeen@kmi.re.kr/051-797-4757)
최수빈 경제산업연구실 연구원
(choesubin@kmi.re.kr/051-797-4741)

우리나라 취업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017년 기준 2,024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길며, OECD 평균인 1,729시간과도 큰 격차를 보인다. 이에 정부는 삶의 질 제고와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였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었으며,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이 21개에서 5개 업종으로 대폭 축소되었다. 더불어 특례업종의 지나친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연속 휴식시간(11시간)을 제공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적용을 받는 해양수산업 사업체 수는 약 4만 개 이하(근로자 5인 이상, 특례업종 제외, 해양산업 약 7,035개, 수산업 약 32,900개 이하)로 추산되어, 전체 해양수산업체 14만 3천여 개소의 약 28%를 차지한다. 그러나 종사자수로는 전체 해양수산업 종사자 123만 8천명의 약 49%인 약 61만 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수산물 생산업은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규정에 의해 원래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았다. 수산물 운송업과 해운업은 특례가 존치되어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면 수산물 가공업은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을 받으며, 수산물 유통업과 항만업의 일부 업종(도소매업 및 보관업 관련)은 특례에서 제외되어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분야 근로 현황과 향후 제도시행이 사업체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해양수산업 1,155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한 결과, 해양수산업 사업체 중 52시간 이상 근로자가

1명 이상 존재하여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제도시행으로 생산 활동에 영향이 있다’는 사업체는 전체 응답자의 8.5%로 나타났다. 해양수산 업계에서 제도시행 이후 주로 예견되는 문제점으로는 매출액 감소, 인력이탈, 일시적 수요에 대한 대응 불가 등이 꼽혔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사업체는 6.1%에 불과하였으며, 특히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대응 방안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영세기업에 특화된 인건비 부담 지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기업 컨설팅, 일자리 매칭 등의 맞춤형 고용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채용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15.2%로 나타나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이후 기업의 실제 신규 고용의사를 엿볼 수 있었다. 또한, 과거 시계열 고용노동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Panel VAR 모형을 적용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영향을 분석한 결과, 해양수산업에서 최대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축소될 경우 5년 후까지의 상용근로자 기준 누적고용증가 규모는 약 11,000명으로 추정된다. 부문별로는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이 4,965명으로 규모면에서 가장 큰 고용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수산물 가공업, 해양기기·장비제조업, 수산물유통업 순으로 큰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제도 시행이 이러한 고용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와 정부의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본 연구의 사업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규채용 관련 애로사항으로 인건비 부담, 업무 능력 보유자 구인의 어려움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정부지원이 필요한 것은 종사자 임금 지원, 법준수 기업 혜택 제공, 인력 교육 지원, 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현행 정부지원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예산 및 지원대상 확대, 정책 홍보 및 지원 절차의 간소화 등이 요구된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생산성 증대 방안 마련, 해양수산 세부 산업별 맞춤형 지원제도 마련, 신규채용 기업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 향후 해양수산 고용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해양수산업 고용 실태조사 추진, 범부처 고용통계 공유방안 마련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 내용

■ 기업규모별 단계적으로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기존에는 주당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연장근로시간(12시간) 및 휴일근로시간(16시간)을 합하여 최대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했으나, 개정법 발효로 인해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연장 근로가 1주에 최대 12시간만 가능하게 되어 주당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 운영됨
- 근로시간 단축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부터 5인 이상까지 기업의 규모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됨

■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이 21개에서 5개 업종으로 대폭 축소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이 기존 21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대폭 축소됨
- 특례가 존치되는 업종은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임
- 기존에 특례업종이었으나 개정법의 시행으로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은 보관 및 창고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숙박업 및 주점업 등이 있음
- 특례가 존치되는 5개 업종에 대해서는 지나친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11시간의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여 지나친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도록 함

해양수산분야별 근로시간 단축 제도 적용 현황

■ 수산물 생산업 및 수산물 운송업은 근로시간 단축 미적용, 수산물 가공업 및 일부 수산물 유통업(도소매업 및 보관창고업)은 근로시간 단축 적용

- 수산업 중 수산물 생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규정(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수산물 가공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의 영향을 받으며, 수산물 유통업은 특례가 존치된 업종(수산물 운송업)과 특례가 제외된 업종(수산물 중개 및 도소매업, 수산물 냉장 및 냉동창고업)으로 나뉨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특례에서 제외된 수산물 중개 및 도소매업, 수산물 냉장 및 냉동 창고업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받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됨

■ 해운업 특례 존치, 항만업 중 보관·창고업 및 도매·상품중개업 특례 제외

- 해운업의 경우 수상운송업 및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특례가 존치되어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영향을 받지 않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속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함
- 항만업의 경우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529)에 해당하는 업종은 특례가 존치되어 근로시간 단축에 영향을 받지 않으나, 보관 및 창고업(521) 및 도매 및 상품중개업(529)관련 업종은 특례에서 제외되어 근로시간 단축에 영향을 받음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받는 해양수산업 사업체와 종사자 수

■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적용을 받는 해양수산업 사업체 수는 약 4만 여개 (해양산업 약 7,035개, 수산업 약 32,900개) 이하로 추산됨

-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적용을 받는 해양산업 사업체수는 7,035개 이며, 수산업 사업체수는 32,900개 이하로 추산되며, 이는 해양수산업 전체 사업체의 약 28%를 차지함
  - 해양산업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는 각각 17,854개, 311,091명이며, 수산업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는 각각 125,283개, 927,328명임
- 그러나 종사자수로는 전체 해양수산업 종사자 123만 8천명의 약 49%인 약 61만 명 수준으로 추정됨
- 특례 존치 업종 중 하나인 해운업에는 4,264개 사업체에 59,812명이 종사하고 있음

국내외 근로시간 단축 사례

■ 우리나라에 앞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한 국가들의 경우, 1,356~1,710시간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을 보임

- 독일은 산업별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7년 연간 근로시간 평균은 1,356시간임. 근로시간 계좌제를 활용하여 근로시간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고용 안정을 유지함

- 프랑스는 정부입법을 통해 주 35시간 근로시간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 연간 근로시간 평균은 1,514시간임. 연장 근로는 정해진 기준 내에서 노사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으나, 야간근로는 엄격하게 규제함
- 영국은 사업장 단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으며, 2017년 연간 근로시간 평균은 1,681시간임.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해 주당 4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원할 시 언제든 합의를 취소할 수 있음
- 일본은 2,100시간대에 달하는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1988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였으며, 2017년 연간 근로시간 평균은 1,710시간임. 이러한 근로시간 감소는 단시간근로자 비율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초과근로시간 상한규제를 두고 있음

■ 2004년 근로시간 단축을 한차례 단행하였으나, 2017년 우리나라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2,024시간으로 여전히 긴 편

- 우리나라 연간 1인당 근로시간은 1989년 주 44시간 근무제도가 도입되기 이전 1980년대에는 2,900시간대에 달했으며, 1989년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임
- 이후, 2003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기업규모에 따라 6단계 걸쳐 주 40시간 근무제도가 시행되어,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980년 2,864시간에서 2017년 2,024시간으로 감소
- 앞서 살펴본 해외사례와 비교해보면, 2017년 우리나라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이 매우 긴 것을 재확인할 수 있음

계량분석모형으로 해양수산업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 산출

■ Panel VAR모형을 활용하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해양수산업의 향후 5년간 누적 고용효과 산출

- 첫 단계에서는 Panel VAR모형을 적용하여 전 산업을 대상으로 고용함수와 충격반응함수를 추정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연계표와 추정계수를 이용하여 해양수산업 부문별 고용효과를 산출함
- 분석자료는 전 산업 고용함수 추정에 고용노동부의 2009~2016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임금구조부문과 「사업체노동실태현황」을 사용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해양수산업의 고용효과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2016년 기준 「해양산업통계」와 「수산업실태조사」의 부문별 종사자수를 사용함

그림 1. 해양수산업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영향 추정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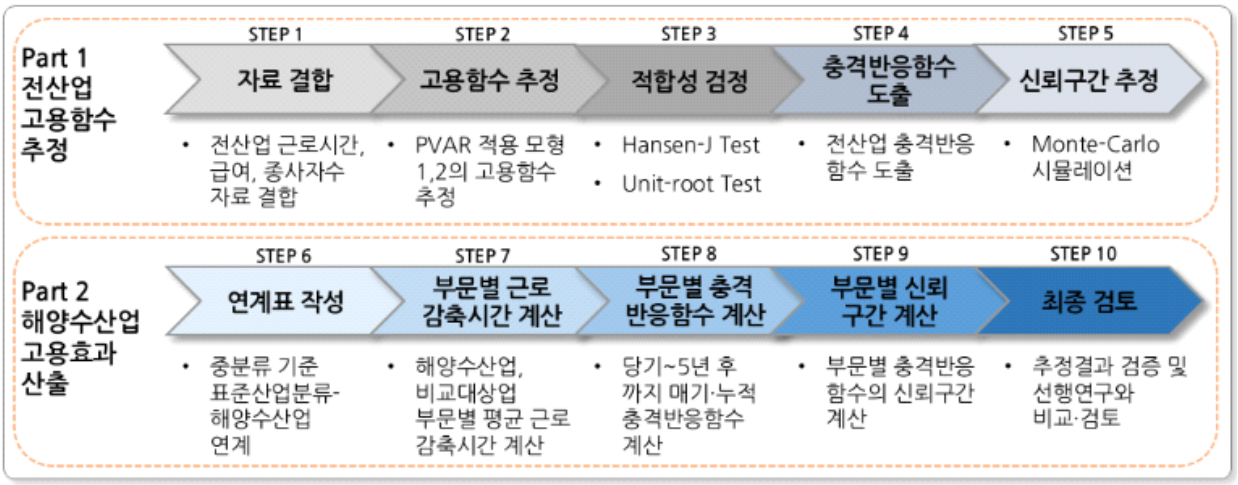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해양수산업의 평균 감축 근로시간은 1.09시간, 5년간 누적 상용 근로자 고용효과는 11,882명으로 추정

- 분석결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해양수산업의 향후 5년간 누적 상용근로자 신규 고용효과는 11,882명이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 대상인 해양수산업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수(284,997명)의 4.17%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수산물 생산업과 특례업종인 해운업 제외)
- 단축되는 근로시간 기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해양수산업 부문은 수산물가공업으로 평균 3.5995시간 감축되며, 다음으로 해양기기·장비제조업이 1.8653시간, 해양환경 정화 및 복원업이 1.5558 시간으로 뒤따름
- 고용 규모 기준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이 4,965명으로 가장 큰 고용증가 효과가 예상되며, 수산물가공업이 4,085명, 수산물유통업이 757명으로 추정됨

표 1. 해양수산업 부문별 5년간 누적 고용효과

(단위: 시간, 명)

순번	업종	평균 감축시간	고용효과	순번	업종	평균 감축시간	고용효과
1	해운업	0.4759	514	6	해양환경 정화 및 복원업	1.5558	20
2	항만업	0.9929	694	7	해양관광업	0.8724	52
3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	1.4715	4,965	8	수산물생산업	0.2104	246
4	해양기기·장비 제조업	1.8653	1,210	9	수산물가공업	3.5995	4,085
5	해양건설업	0.8286	99	10	수산물유통업	0.5010	757
총 계				평균 감축시간		고용효과	
10개 해양수산업 총계				1.07		12,642명	
제도 적용 대상 산업 총계(수산업 및 특례업인 해운업 제외)				1.09		11,882명	

자료: 저자 작성

실태조사로 본 해양수산분야 근로 현황 및 제도 시행의 영향

■ 해양수산분야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2.8시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 초과하는 기업의 비율은 6.0%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해양수산분야 상용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2.8시간이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기업의 비율은 6.0%임

■ 해양수산분야 사업체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적용을 받는 업체는 21.2%, 제도시행으로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8.5%

- 주당 52시간 근로자가 1명 이상 존재하여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적용을 받는다고 응답한 업체는 21.2%이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8.5%임
- 기업 규모별로 보면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채용 계획은 15.2%, 신규채용의 애로사항으로 인건비 부담, 업무 능력 보유 근로자 구인의 어려움 등

- 신규채용계획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중복응답, 합 100%초과) 신규채용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전체의 15.2%였으며, 상대적으로 대기업일수록 신규채용을 고려하고 있는 비율이 높음
- 신규채용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재무여건상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응답이 5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한 근로자를 찾기 어렵다'가 42.4%, '경기가 좋지 않아 신규채용이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37.1% 순으로 나타남
-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이 실제로 신규채용 및 고용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업의 노력과 정부지원이 필요함

■ 근로시간 단축으로 연간 매출액 감소, 인력이탈 우려, 일시적 수요증가에 대응 불가 등 우려

-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으로 예상되는 문제로는(중복응답, 합 100%초과) '목표 생산량을 맞추지 못해 연간 매출액 감소'가 우려된다는 응답이 57.6%로 가장 높았으며, '기존 근로자들의 실질임금 감소로 인한 인력 이탈 우려'가 47.3%, '계절적·일시적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 불가'가 36.3% 로 조사됨

■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응방안 마련 6.1%에 불과, 규모가 작을수록 대응방안 마련 미흡

-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대응방안이 '있다'는 응답이 6.1%에 불과하였으며 대응방안이 '없다'는 응답이 93.9%로 조사되어 전반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비율이 높으며,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대응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소규모 영세기업에 특화된 인건비 부담 지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기업 컨설팅, 일자리 매칭 등의 맞춤형 고용지원 정책이 필요함

제도안착을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사항

■ 종사자 임금 지원, 법 준수 기업 혜택 제공, 인력 교육 지원, 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 등 필요

-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희망하는 정부지원제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중복응답, 합 100% 초과 기준) 종사자 임금지원(51.0%), 법 준수 기업 혜택 제공(28.1%), 인력 교육 지원(17.8%), 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17.2%) 순임
- 자금지원, 혜택 제공 등 직접적 지원제도를 제외하면 인력관련 지원 제도(교육, 전문 인력 공급, 인력 매칭)를 희망하는 기업의 비율이 매우 높음

■ 현행 정부지원제도 활용도 낮아 활용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정부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제도(시간 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사업,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 등)의 활용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83.6%가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6.4%만이 지원제도를 활용함
-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정책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51.2%로 가장 높았으며,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 부족'이 33.2%, '정부 지원 절차의 까다로움'이 11.9% 등으로 나타남
- 정부지원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부 지원 예산 및 지원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며,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지원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지원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함

■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증대로 이어지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책 필요

- 근로시간 단축제도라는 정부의 규제는 고용 및 근로여건 개선을 돕는 관련정책이 수반될 때 고용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어떤 경제 여건과 제도적 보완책이 수반되느냐에 따라서 고용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기업의 생산성 향상, 기업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제도 활성화 등이 필요함

■ 범정부 차원의 고용정책과 해양수산부 차원의 추진과제 필요

- 범정부 차원의 해양수산분야 고용정책으로는 소규모 영세기업에 대한 고용지원정책,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증대로 이어지기 위한 생산성 증대 방안 마련, 해양수산 세부 산업별 맞춤형 지원제도 마련, 신규채용 기업을 위한 제도적 지원 등이 필요함
- 한편 부처 차원의 향후 추진과제로는 해양수산 고용정책방향 수립, 해양수산업 고용실태조사 추진, 범부처 고용통계 공유방안 마련 등이 필요함

KMI 현안연구 요약보고서

구분	제목	발행일
제1호	미얀마 수산 성장 엔진, 국립수산대학 설립 ODA 사업으로 밝혀야	2018.10.12.
제2호	청년 물류인력 해외진출 정주 지원사업 구상 연구	2018.10.12.
제3호	청년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제물류인력 양성 서둘러야	2018.10.13.
제4호	연안여객 해상교통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방안 연구	2018.10.18.
제5호	자율운항선박으로 스마트 디지털 해상물류체계 실현	2018.10.18.
제6호	해조류 국제양식규범확산에 따른 국내 김산업 수용태세 분석 -ASC 인증제를 중심으로-	2018.10.25.
제7호	표준계약서 및 장기 계약 제도 도입으로 컨테이너 화물 해상 운송계약 관행 개선	2018.10.25.
제8호	선박관리산업 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2018.11.01.
제9호	어린물고기 남획실태 및 보호정책 연구	2018.11.01.
제10호	연안토지매입 동향과 도입 가능성 검토	2018.11.08.
제11호	강릉선 KTX 개통에 따른 해양관광 수용태세 개선방안	2018.11.08.
제12호	시민 참여형 연안·해양 정보 생산·활용 방안	2018.11.15.
제13호	부산항 배후지 부가가치활동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연구	2018.11.15.
제14호	해양바이오 산업화 촉진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방향 연구	2018.11.22.
제15호	항만물류 부문의 남북 협력사업 추진 전략	2018.11.22.

URL: https://www.kmi.re.kr/